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31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4년 4월 30일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 제3항,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아래 5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2023년 5월 1일 추가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실증사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종료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기 지정 특구의 실증사업 종료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 위치 및 면적

No	위 치	면적(m ²)
1	경상북도 의성읍 철파리, 원당리 일원	225,090
2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대룡산로 186 일원	20,680
3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1길 48-27 일원	32,945
4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222 일원	49,345
합 계		328,060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 지정 목적 : 세포배양식품 상용화에 필수적인 고순도 세포 추출을 위한 표준을 마련하고, 미래 먹거리인 푸드테크 산업생태계 육성
- 지정 기간 : 2024. 06. 01. ~ 2028. 12. 31. (4년 7개월)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내용

No	사 업 명	내 용
1	가축 유래 세포배양 식품용 세포수급 및 상용화 활용 실증	생검과 당일 도축물을 활용하여 고품질 세포추출 및 세포주 상용화, 세포은행 기반 세포배양식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 마련
2	축산물 유래 세포배 양식품 제품화 실증	세포배양식품 양산화에 필요한 소재 개발 및 상품성 있는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개발
2-1	당일 도축 소 세포를 활용한 세포배양식품 제품화 실증	당일 도축해 등급 판정 전의 소 세포를 기반으로 3차원 부유배양 방식을 활용해 세포배양식품의 상업용 대량 생산공정 구축 및 안전성 실증
2-2	생검 기반 소 세포를 활용한 덩어리 형태의 세포배양식품 제품화 실증	살아있는 소로부터 채취한 세포를 기반으로 3D 바이오프린팅 방식을 활용해 덩어리 형태의 세포배양식품 상업용 대량 생산 및 안전성 실증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재)경북테크노파크	하인성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삼풍동)
2	(주)라트바이오	장구, 이원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혼길52번길 10, 3층 304-3 (온의동, 드림타워3층)
3	(재)백신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사업단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이홍균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1길 48-27
4	(주)다나그린	김기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구로 116-1, 2층 201호 (방배동, 노블하임)
5	(주)씨위드	금준호, 이희재	대구광역시 달성군 테크노중앙대로 333, 5층 507-A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산학협력관)
6	(주)마이크로디지털	김경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15, 원스동 7층 701호 (삼평동, 판교7벤처밸리1)
7	(주)티센바이오팜	한원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융합기술로 66-1, 315호 (세포막단백질연구소)
8	(주)마이뉴	정민교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8길 38, 2층 202호(합정동)
9	(주)엘엠케이	이교웅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53, 5층 507호 (공단동,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10	에스에스바이오팜(주)	김옥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홍천당곡길 56-3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법 제9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신설) 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 완료 시, 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 방법

- 시행 기간

No	사업명	시행기간
1	가축 유래 세포배양식품용 세포수급 및 상용화 활용 실증	2025. 01. 01.~2026. 12. 31.
2-1	당일 도축 소 세포를 활용한 세포배양식품 제품화 실증	2025. 01. 01.~2026. 12. 31.
2-2	생검 기반 소 세포를 활용한 덩어리 형태의 세포배양식품 제품화 실증	2025. 01. 01.~2026. 12. 31.

-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실증특례>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1	가축 유래 세포배양식품용 세포수급 및 상용화 활용 실증	① 세포배양식품 제품화를 목적으로 생검 방식으로 살아있는 소의 세포 및 조직 채취 허용 (동물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부대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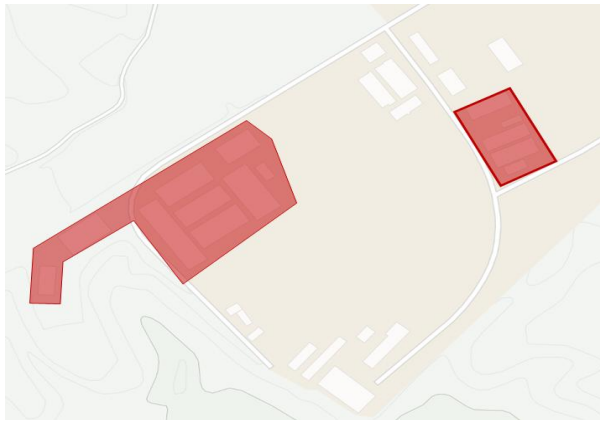
		○ '세포배양식품 생산 및 상용화 목적의 생검'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에 해당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특구 사업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 및 실험 실태를 농식품부에 매년 통지할 것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
2-1	당일 도축 소 세포를 활용한 세포배양식품 제품화 실증	○ 경북도는 관계부처(농식품부 포함), 특구사업자, 관련 기업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실증성과를 보고하고, '(가칭) 생검 대상 동물 보호 표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할 것 ② 세포배양식품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한 소의 도체(앞다리 및 우둔부위 제외)에 대하여 축산물 등급판정 제외 특례 허용 (축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부대조건> ○ 축산물 등급판정 제외 특례를 적용받는 도축장은 특구사업에 참여하는 도축장으로 한정함
2-2	생검 기반 소 세포를 활용한 덩어리 형태의 세포배양식품 제품화 실증	○ 세포를 추출하기 위해 도축장에서 반출한 생육의 유통·판매 금지 ○ 농식품부, 관계기관, 지자체, 특구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포 추출 목적의 소 도체 처리 현황 등을 점검하여야 함 ○ 세포배양식품 제조 목적의 세포 추출 후 소 도체의 처리 방안 등은 향후 협의체를 통해 추가 검토하여야 함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에 합격한 식육에서 세포를 추출하고, 10℃ 이하로 냉각하여 반출하며, 식육의 소유자와도 충분한 협의를 하여 위생적으로 세포를 채취하여야 함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1.나.7)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4차산업기반과에 비치



<경상북도 의성읍 철파리, 원당리 일원,
의성바이오밸리산업단지(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대룡산로 186 일원,
(주)라트바이오(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 內)>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1길 48-27 일원,
(재)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222 일원, 안동봉화축협 안동축산물공판장>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경상북도 4차산업기반과(Tel : 054-880-2476, www.gb.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
-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 ²)
1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호산동,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	10,065,000.0
2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및 동내동, 신서동, 상매동, 숙천동, 율암동 일원	4,216,496.0
3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2가 188-1, 50 일원	45,481.8
4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1166-1 일원	11,820.0
합 계		14,338,797.8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 지정 목적 : 재활용이 금지된 폐치아를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하여 의료기기(골이식재) 시장을 새로 개척하고, 치의학 ‘연구-임상-사업화’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지정 기간 : 2024. 06. 01. ~ 2030. 12. 31. (6년 7개월)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내용

No	사 업 명	내 용
1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 및 기술사업화 실증	폐기물관리법으로 인해 재활용이 허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인체치아의 재활용을 위한 가공 공정 개발 및 원재료 공급으로 치아골 이식재 시제품 개발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양진영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2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권대근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75
3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	송윤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4	(주)덴티스	심기봉	대구광역시 동구 율암로 6, 87(제조소 1, 2)
5	(주)코리아덴탈솔루션	허성춘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동로41번길 10, 보림팩토피아 601호
6	(재)대구테크노파크	도건우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법 제9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신설) 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 완료 시, 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 방법

○ 시행 기간

No	사 업 명	시행 기간
1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 및 기술사업화 실증	2025. 01. 01.~2028. 12. 31.

○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실증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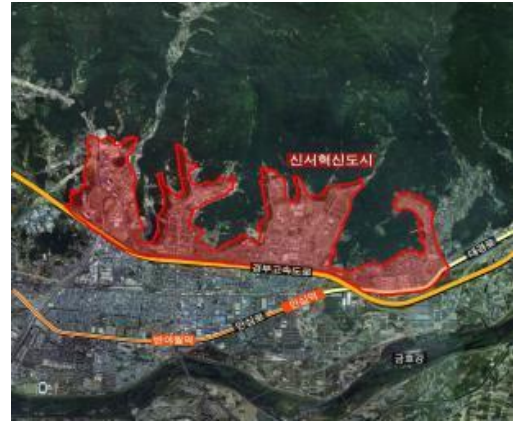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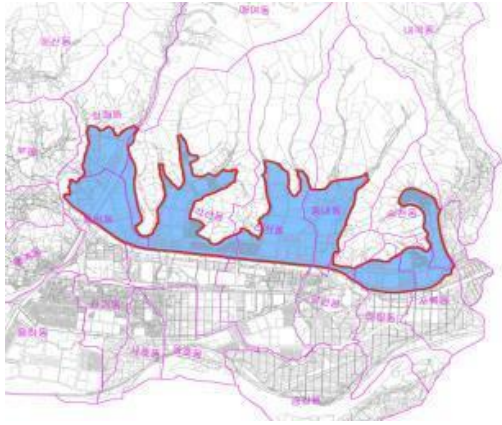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1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 및 기술사업화 실증	의료기기(치과용 골이식재) 제작 목적으로 의료폐기물인 타인의 폐치아 재활용 허용(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부대조건> ○ 특구기간에는 기증 동의를 받은 폐치아만 재활용하고, 기증자의 추적 및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제조하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등 제조업 인허가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특구기간에는 폐치아의 처리와 관련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등의 규정 유예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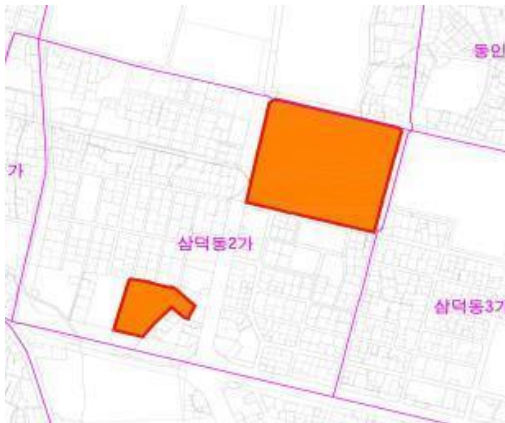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대구광역시 의료산업과에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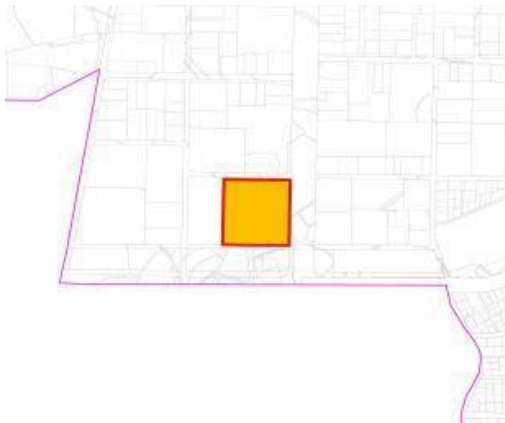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호산동,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및 동내동, 신서동, 상매동, 숙천동, 울암동 일원>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2가 188-1, 50 일원>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1166-1 일원>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대구광역시 의료산업과(Tel : 053-803-6424, www.daegu.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 ²)
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남면로 201	49,584.2
2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울대5길 29	12,579
3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	128,973
4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회야로 45-73 (소주동)	90,419.3
5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871-14	34,250.2
6	부산광역시 남구 신전로 365, 용당11관	-
7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91 바이오산업진흥원	31,211.6
8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공단로 36	-
9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봉성1길 41	7,226
1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사림동)	571,560
1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250,330
1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남면로 201	24,268.4
1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	13,335.1
14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552-1번지	627,584
합 계		1,841,320.8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 지정 목적 : 수산부산물 재활용 실증을 통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재활용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모델을 확립하여, 화장품·의료용 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산
- 지정 기간 : 2024. 06. 01. ~ 2028. 12. 31. (4년 7개월)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내용

No	사업명	내용
1	수산부산물 재활용 실증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수산가공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산부산물에 대한 분리배출, 수집, 운반, 처리 등 기준을 마련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주)동원에프앤비	김성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 (양재동) (예정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201)
2	사조산업(주)	이창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충정로2가) (예정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울대5길 29)
3	(주)엠에스씨	김호석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회야로 45-73 (소주동)
4	(주)나루아토	변홍주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91 바이오산업진흥원 성장동 103호

5	(주)선마린바이오테크	박시향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91 바이오산업진흥원 시험생산동 204호
6	아쿠아프로(주)	윤지현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용당11관
7	삼진물산(주)	김관석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1239-1
8	신진물산(주)	허성민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봉성1길 41
9	동원로엑스(주)	박성순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 (예정지: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871-14)
10	경남대학교산학협력단	한상보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월영동, 경남대학교 내)
11	창원대학교산학협력단	박종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사림동)
12	경상국립대학교산학협력단	정재우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예정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
13	경남지역산업진흥원	김태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14	(재)경남테크노파크	김정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남면로 201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법 제9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신설) 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 완료 시, 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 방법

- 시행 기간

No	사 업 명	시행 기간
1	수산부산물 재활용 실증	2025. 01. 01.~2026. 12. 31.

-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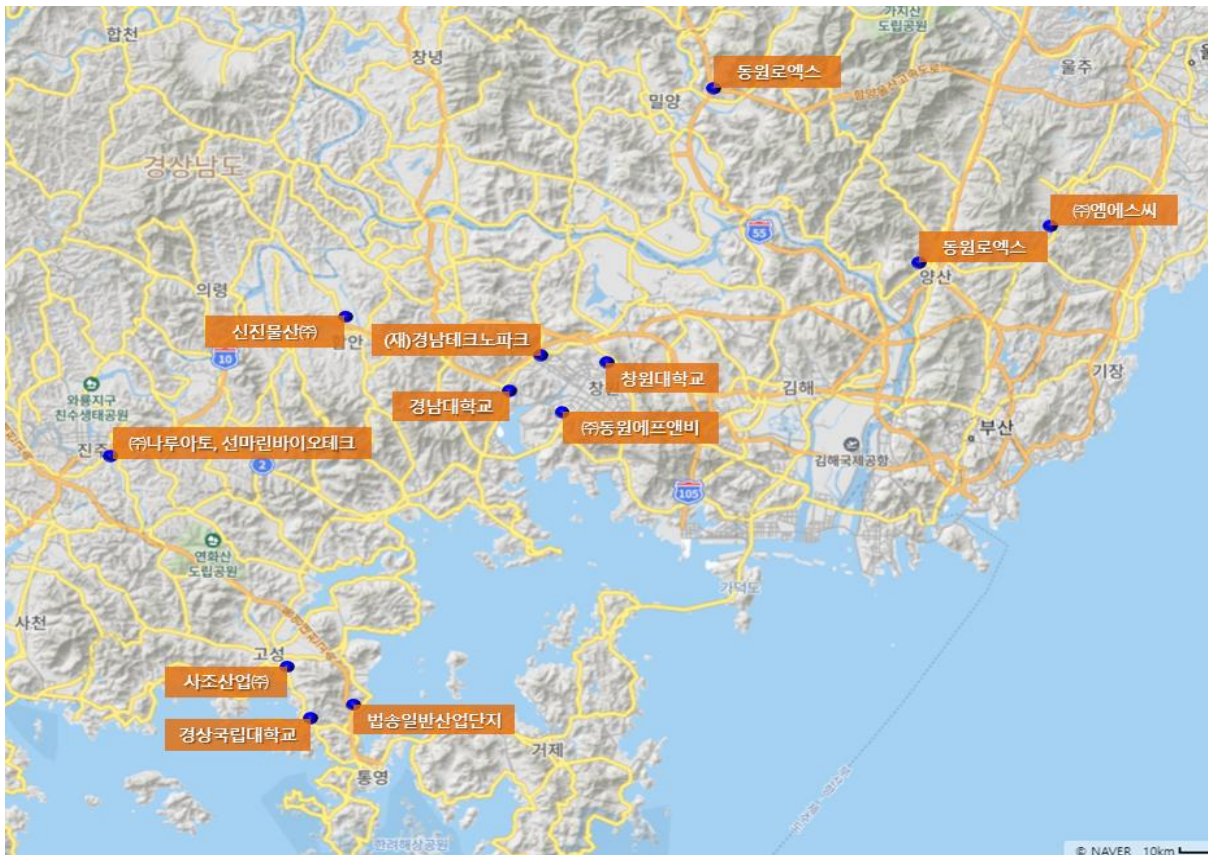
<실증특례>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1	수산부산물 재활용 실증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수산가공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운반 등 처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부대조건> ○ 폐기물의 재활용을 업으로 하려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등이 필요하나, 특구기간에는 허가나 승인 없이 수산가공잔재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 수산가공잔재물은 보관, 수집·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부패와 악취가 우려되므로 이를 저감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여야 함

- 특구를 통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체계가 정립될 경우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는 방안 검토 필요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경상남도 산업정책과에 비치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위치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남면로 201,
(주)동원에프앤비>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울대5길 29,
사조산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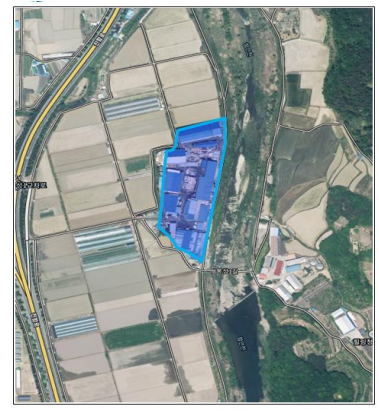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
경상국립대학교
(통영캠퍼스)>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회야로 45-73 (소주동),
(주)엠에스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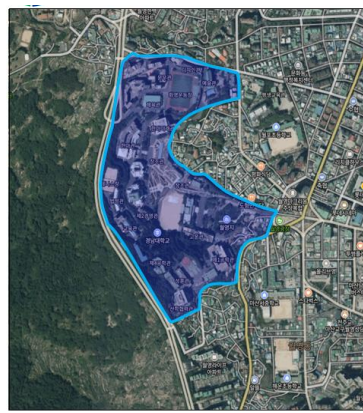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91 바이오산업진흥원,
(주)나루아토, (주)선마린바이오테크>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봉성리 567,
신진물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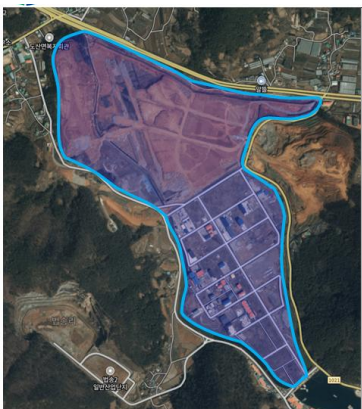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사림동),
창원대학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경남대학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남면로 201 및
창원대로18번길 22,
(재)경남테크노파크,
창원산업진흥원>



<경남 통영시 도산면 범송리
552-1번지,
범송일반산업단지>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경상남도 산업정책과(Tel : 055-211-3024, <https://www.gyeongna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 ²)
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4길 61	59,246
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전기의길 10, 202호	3,689.5
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50 테크노동 9층 906호	52,014.2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28, 12층	-
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570-11, 2층	-
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3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경남지원	9,238
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6 (팔용동)	8,663.5
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74-2	116,082.1
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263	3,233.3
10	대원수소충전소 인근	30,319.2
11	마산로봇랜드 인근	325,677.8
12	창원대로 인근	511,945.6
13	창원시청 인근 주거단지(후보)	2,400,000
합 계		3,520,109.2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 지정 목적 : 자전거·카고 바이크 등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용 수소연료전지 제작 및 수소충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형 수소 모빌리티 신시장 창출
- 지정 기간 : 2024. 06. 01. ~ 2028. 12. 31. (4년 7개월)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내용

No	사 업 명	내 용
1	생활 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실증사업	수소 모빌리티에 대한 시험 인증 기준 및 충전기준 수립, 자전거 도로 실증을 통한 안전성 입증
1-1	수소 모빌리티 실증	수소 카고바이크용 500W급 국산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수소 카고바이크의 자전거도로 주행 실증
1-2	수소 공급망 구축 및 실증	수소차 충전소 내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 시스템 구축(충전압력30Mpa 이내, 충전용기 3~5L 이내) 및 충전기준 수립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주)범한퓨얼셀	정영식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4길 61 범한산업(주)
2	(주)이플로우	윤수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전기의길 10, 202호(성주동)
3	(주)제니아	이정석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테크동 9층 906호

4	(주)지바이크	윤종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28, 12층 (역삼동,송민빌딩)
5	(주)엔티에스	최원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570-11, 2층(여의동)
6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조영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31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경남지원
7	창원산업진흥원	홍남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6 (팔용동)
8	(재)경남테크노파크	김정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6 (팔용동)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법 제9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신설) 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 완료 시, 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 방법

- 시행 기간

No	사 업 명	시행 기간
1-1	수소 모빌리티 실증	2025. 01. 01. ~ 2026. 12. 31.
1-2	수소 공급망 구축 및 실증	2025. 01. 01. ~ 2026. 12. 31.

-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실증특례>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1-1	수소 모빌리티 실증	① 소형 수소모빌리티용(수소 카고바이크) 연료전지를 제조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 (수소법 제36조 제1항, 제3항 및 제44조 제1항, 제4항) <부대조건> ○ (수소법 준수) 이동형 연료전지 제조자는 「수소법」 제36조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허가, 제44조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 등 수소법령상의 안전관리체계*를 준수하여야 함 * 기술검토, 제조허가, 완성검사,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규정 제출, 사업개시 신고, 수소용품 검사 등 - 다만, 연료전지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일반 국민의 피해 우려가 적은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서 실증 종료 이후 실증에 사용된 제품이 사용·유통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인허가검사 예외를 허용* * 이 경우,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을 바탕으로 제품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의 적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타법준수) 연료전지의 구성품(압력용기 등) 또는 실증 운용 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또는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안전관리계획) 소형 모빌리티용 연료전지 제조에 관한 기준은 KGS AH372을 준용하되, 소형 모빌리티 운행 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용

-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안전위원회의 안전성 검증 내용>

- (실증 前) 실증기준, 안전성평가, 안전관리계획 및 자체검사 결과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 (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안전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안전성 검증 내용 및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보고하고 승인 요청하여야 함

- ② 소형 수소모빌리티(수소 카고바이크)의 실증특례 허용(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15조 제1항 및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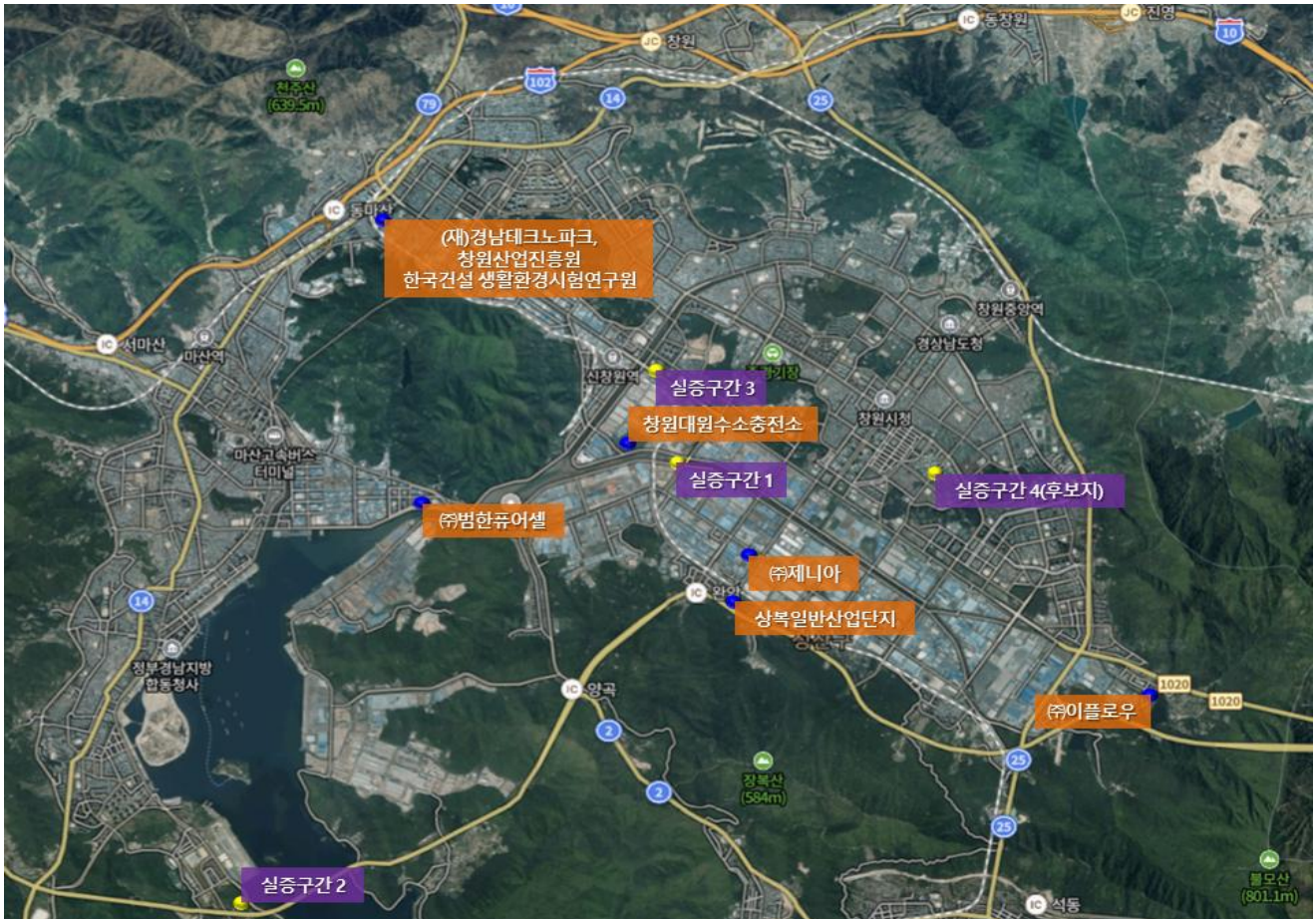
<부대조건>

- 실증특례 시 최소한의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실증을 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가 필요함
- 특히 실증 전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기관에서는 카고바이크의 기계적 요소 뿐만 아니라, 화재 및 폭발예방과 관련하여 카고바이크에 적용되는 수소요소기술에 대해 수소법 및 KGS CODE에서 제품 특성(충돌, 충격, 진동, 환경요인 등)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 상기의 수소요소기술 외 제품의 기계적 요소(제동, 조향, 프레임, 등화 등)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기관에서는 수소 카고바이크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측정법 및 시험기구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과 시험기관의 검토를 통해 적용 가능한 안전기준에 대해 시험 후 이에 적합한 경우에만 실증특례를 허용함
-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하는 전기자전거의 요건 및 폭을 벗어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별도 추가 협의가 필요함

		③ 수소 카고바이크의 자전거도로 운행 허용(자전거법 제20조의2 제3항) <부대조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시하는 안전기준 충족 및 안전확인 시험기관의 안전성 검증 후 추진할 것 ○ 3륜형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요건을 충족하고, 원칙적으로 폭700mm이하로 제작하여 사용할 것(폭 700mm이상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로 주행하는 경우 경찰청 협의 후 차도로 주행하여야 함) ○ 3륜형 전기자전거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도록 할 것
1-2	수소 공급망 구축 및 실증	④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에 대한 실증특례 허용(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별표5) <부대조건> ○ (충전안전성 확보) 자동차용 국제 수소충전 규격의 적용이 불가하므로 용기 온도가 8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함 ○ (안전관리계획) 기존 수소차 충전소의 안전기준(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5, 융복합 충전소 특례기준 등)을 준용하되,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함 <안전위원회의 안전성 검증 내용> • (실증 前) 실증기준, 안전성평가, 안전관리계획 및 자체검사 결과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 (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안전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안전성 검증 내용 및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경상남도 산업정책과에 비치



<경남 수소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위치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회원구 자유무역4길 61,
(주)범한퓨얼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전기의길 10, 202호,(성주동)
(주)이플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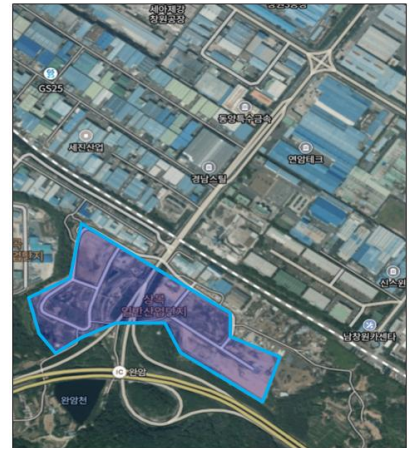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주)제니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31,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팔용동),
(재)경남테크노파크,
창원산업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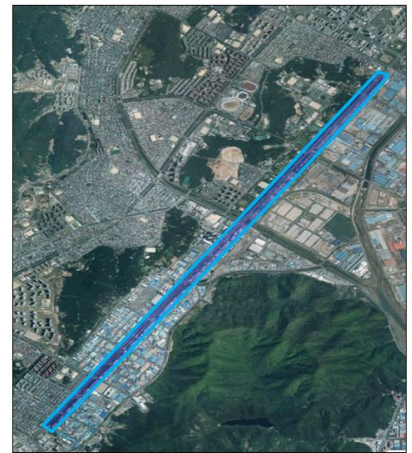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74-2,
상복일반산업단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263, 대원수소충전소>



<대원수소충전소 인근,
실증구간 1>



<창원대로 인근,
창원병원 -> 창원역,
실증구간 2>



<마산로봇랜드 인근, 실증구간 3>



<창원시청 인근 주거단지(후보),
실증구간 4>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경상남도 산업정책과(Tel : 055-211-3024, <https://www.gyeongna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 ²)
1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	18,503
2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송도길 201	399,122
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132,812
4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다복로 465-9	3,864
합 계		554,301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 지정 목적 : 그린암모니아의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직공급 암모니아 연료전지 제작 실증을 통해 청정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 지정 기간 : 2024. 06. 01. ~ 2028. 12. 31. (4년 7개월)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내용

No	사 업 명	내 용
1	45kW급 발전용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 시스템 제작 및 상품화 실증	암모니아 직공급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시스템 제작, 설치, 운전으로 발전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한 사업화 기반 마련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한국중부발전(주)	김호빈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 (대천동)
2	(주)에프씨아이	이태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1로 41-7 (탑립동)
3	트윈에너지(주)	허창기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388번길 48-5
4	(주)아이원	김재형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4길 20 (평촌동)
5	(주)케이세라셀	임경태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다복로 465-9
6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김선용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407호 ((재)충남테크노파크 천안밸리)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법 제9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신설) 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 완료 시, 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 방법

○ 시행 기간

No	사 업 명	시행 기간
1	45kW급 발전용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 시스템 제작 및 상품화 실증	2025. 01. 01. ~ 2026. 12. 31.

-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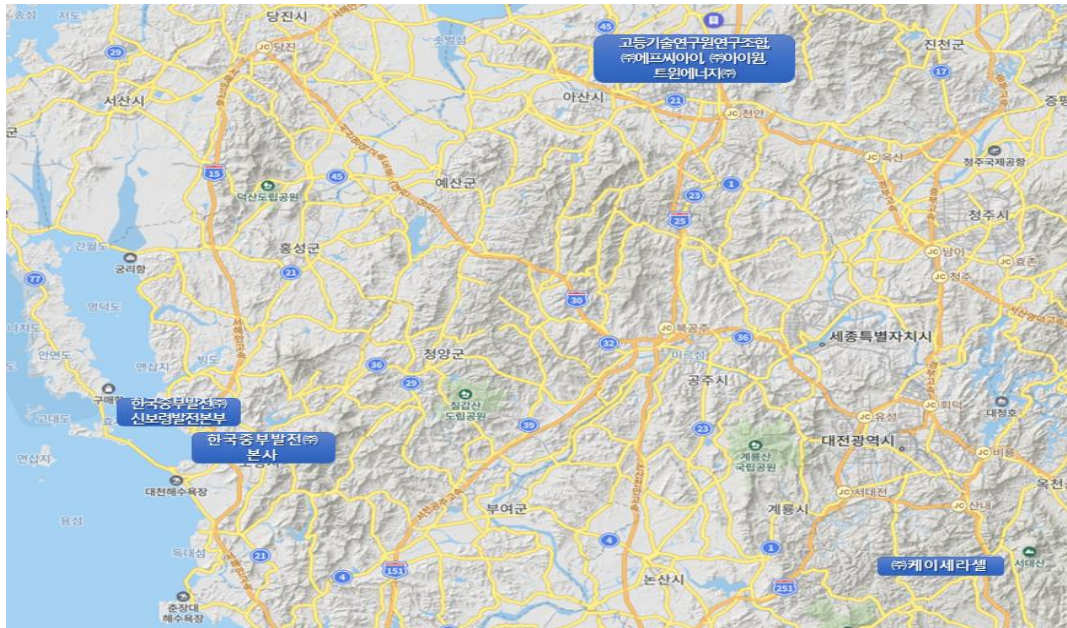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실증특례>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1	45kW급 발전용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 시스템 제작 및 상품화 실증	암모니아 고체산화물 연료전지(DAFC, Direct Ammonia Fuel Cell) 제조·사용에 관한 실증특례 허용(수소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제43조, 제44조 제1항 및 제4항, KGS AH 371 고정형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부대조건> ○ (수소법 준수) 암모니아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제조자는 「수소법」 제36조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허가, 제44조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 등 수소법령상의 안전관리체계*를 준수하여야 함 * 기술검토, 제조허가, 완성검사,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규정 제출, 사업개시 신고, 수소용품 검사 등 - 다만, 연료전지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일반 국민의 피해 우려가 적은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서 실증 종료 이후 실증에 사용된 제품이 사용·유통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인허가·검사 예외를 허용* * 이 경우,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을 바탕으로 제품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의 적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타법준수) 연료전지의 구성품(압력용기 등) 또는 실증 운용 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또는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안전관리계획) 암모니아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제조에 관한 기준은 KGS AH371을 준용하되, 암모니아(NH₃) 취급 및 고온 운전환경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용 ○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함 <안전위원회의 안전성 검증 내용> · (실증 前) 실증기준, 안전성평가, 안전관리계획 및 자체검사 결과의 적정여부를 검토 · (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안전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안전성 검증 내용 및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충청남도 산업육성과에 비치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위치도>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 한국중부발전(주) 본사>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송도길 201, 한국중부발전(주) 신보령발전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주) 에프씨아이, (주)아이원, 트윈에너지(주),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다복로 465-9, (주)케이세라셀>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충청남도 산업육성과(Tel : 041-635-3929, www.chungna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부산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 실증사업 종료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 ²)
1	서면문헌혁신지구 인근(부산광역시 남구 일원)	26,590,750
2	서면문헌혁신지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원)	3,078,116
3	센텀혁신지구 인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원)	51,473,049
4	동삼혁신지구 인근(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원)	14,195,627
5	동삼혁신지구 인근(부산광역시 서구 일원)	13,978,324
6	부산역·중앙동 지구 인근(부산시 동구·중구 일원)	3,331,458
7	사상 스마트시티 지구 인근(부산시 사상구 일원)	2,964,133
8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 일원)	678,092
9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일원)	1,683,954
10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일원)	156,372
11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 일원)	843,232
12	기타지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95)	190,540
13	기타지구(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14)	343,477
14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일원)	5,019,431
15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262)	2,338
16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190번길 57)	1,859
17	기타지구(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190번길 47-6)	776
18	기타지구(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75)	920
합 계		124,532,448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 지정 목적 : 블록체인 및 응용 산업 관련 실증지원으로 신산업 시장 선도
- 지정 기간 : 2019. 08. 09. ~ 2025. 12 .31.(6년 5개월)

3. 실증종료 사업명, 내용 및 기간

- 사업명 :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
- 내 용 :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 청구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실증
- 실증기간 : 2024. 01. 01. ~ 2025. 12 .31.(24개월)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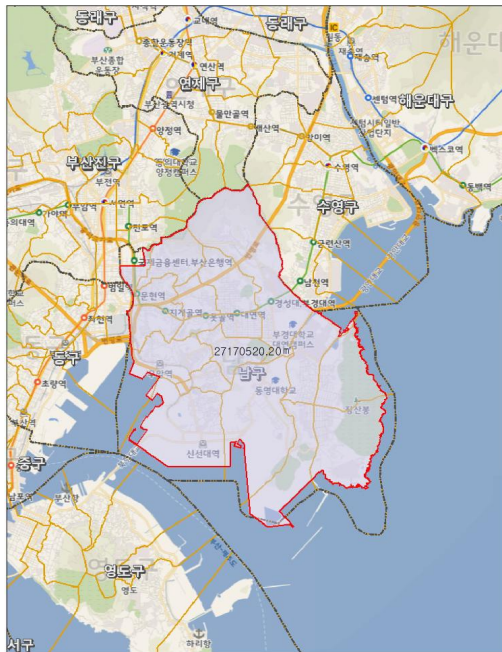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부산대학교병원	정성운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아미동1가, 부산대학교병원)
2	세종텔레콤(주)	김형진, 이병국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2 (초량동 119-3외 5필지) 6층
3	(주)메가브릿지	정한수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87, 융합의학연구동 1층 유알피 1-8호 (아미동 1가)

5.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종료 사유 및 효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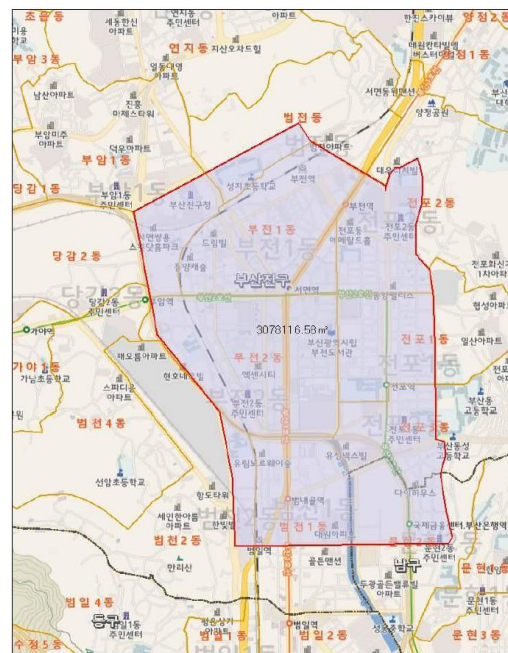
- 사유 : 보험업법 개정('23.10)에 따라, 현행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직접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실손보험 간편청구와 관련된 규제 해소
- 효력 : ① 규제 특례적용 종료, ② 특구사업자의 실증특례확인서 회수

6.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부산광역시 금융블록체인담당관에 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일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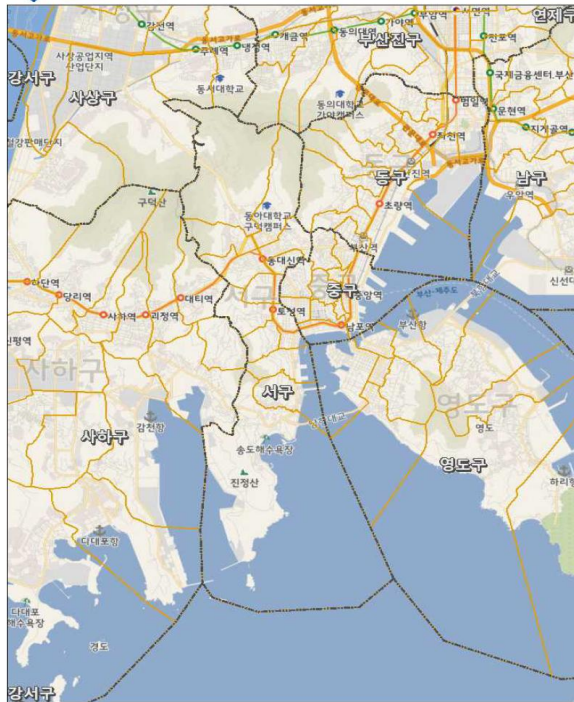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원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원 >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원 >



< 부산광역시 서구 일원 >



< 부산광역시 동구·중구 일원 >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일원 >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 일원 >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일원 >



<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일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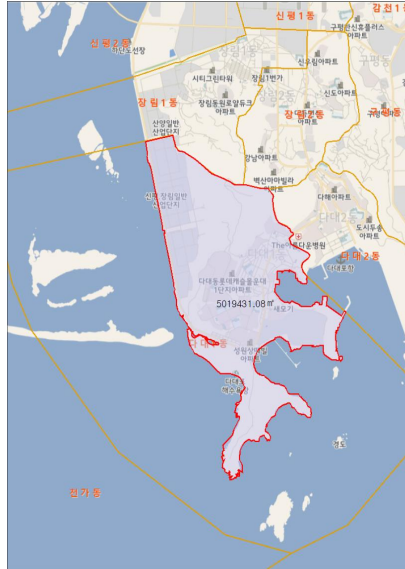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 일원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95 >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14 >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일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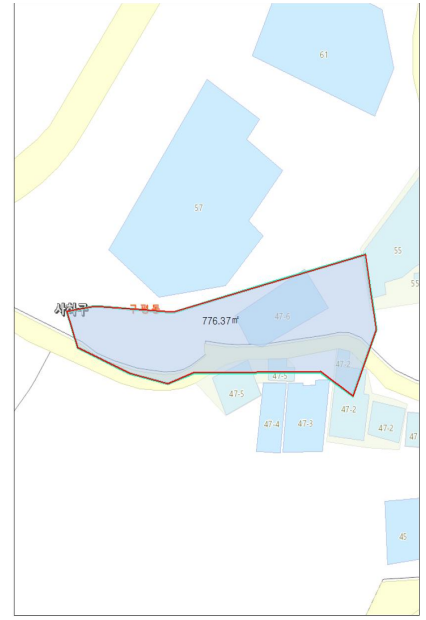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75 >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262 >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190번길 57 >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190번길 47-6 >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금융블록체인담당관(Tel : 051-888-4712, www.bu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